

의안번호	2115510
의 퇴 인	박대출 의원
회 답 일	2022. 03.14.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

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요약

I. 재정수반요인

재정수반요인	추계여부	비고
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(안 제13조제2항 신설)	○	· 추계 가능
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(안 제13조의2 신설)	○	· 추계 가능

II. 비용추계 결과

□ 추가재정소요: 향후 5년간 총 423억원 (연평균 85억원)

[표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3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	연평균
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(안 제13조제2항 신설)	23	—	—	—	—	23	5
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 사업(안 제13조의2 신설)	—	400	—	—	—	400	80
합 계	23	400	—	—	—	423	85

주: 대상 사업장 1,00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설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여 작성하였고, 사업대상 개소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차 례

I. 비용추계 결과	1
II. 재정수반요인	1
III. 비용추계의 전제	2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	2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	2
2.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(안 제13조제2항 신설)	4
3. 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(안 제13조의2 신설)	5
4. 추계 결과	6

일러두기
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-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및 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경우, 2023년에 23억 2,500만원 및 2024년에 400억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423억 2,500만원(연평균 84억 6,500만원)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3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	연평균
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(안 제13조제2항 신설)	2,325	-	-	-	-	2,325	465
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 사업(안 제13조의2 신설)	-	40,000	-	-	-	40,000	8,000
합 계	2,325	40,000	-	-	-	42,325	8,465

주: 대상 사업장 1,00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설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여 작성하였고, 사업 대상 개소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-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(안 제13조제2항 신설)
 - 환경부장관은 제1항¹⁾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급식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“조리공간”이라 한다)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(이하 “조리초미세먼지”라 한다)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함(제2항)
- 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(안 제13조의2 신설)
 - 환경부장관은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음(제1항)
 -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

1) 법 제13조(실태조사의 실시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Ⅲ. 비용추계의 전제

- 안 제13조제2항 신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배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리초미세먼지²⁾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게 되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 -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대상 개소와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비용을 산출함
 - 사업대상 개소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- 안 제13조의2 신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조리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하게 될 경우 저감 시설 설치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함
 -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대상 개소와 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설인 방지시설 및 센서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비용을 산출함
 - 중소규모 음식점과 집합조리시설의 설치비용이 추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 증가 가능
 - 시설 유지관리비용은 시범사업임을 고려하여 제외하였고,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증가 가능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

Ⅳ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

- 비용추계 대상은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및 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시설 설치 비용임
- 추계 방법은 환경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실태조사 비용과 시설 설치비를 합산하여 추계

2) 조리초미세먼지는 배출구를 통해 건물밖으로 배출되는 악취 및 초미세먼지를 포함

<비용추계 산식>

추가재정소요_t

- ① [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(안 제13조제2항)] = [사업대상개소_t¹⁾×실태조사 비용_t²⁾
 ② [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(안 제13조의2)] = [사업대상개소_t³⁾×시설 설치비_t⁴⁾
 이때, t는 추계연도: 2023~2027년

- 1)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통계청 전국일반음식점 표준데이터(2021.11), 전국집단급식소표준데이터(2021.12) 기준³⁾으로 전국 음식점 및 집단 조리시설 중 시설규모 300㎡이상 1,000개소를 실태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
 - 조리초미세먼지 사업대상 개소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- 2) 실태조사비용은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조리초미세먼지 조사를 연 3회 실시하고, 출장비와 재료비를 포함한 비용이 2023년에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약취: 45,700원 × 2(입·출구) × 3회 = 274,200원
 - 초미세먼지: 175,200원 × 2(입·출구) × 3회 = 1,051,200원
 - 출장비 및 재료비: 약 1,000,000원
 - 합계: 2,325,400원
- 3) 2023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 대상 사업장 1,000개소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정
 - 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설 시범사업대상 개소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- 4) 시설 설치비는 조리초미세먼지 방지시설과 센서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용으로 2024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방지시설 (100㎡/min⁴⁾) 설치비 약 30,000,000원
 - 센서모니터링시스템 약 10,000,000원
 - 합계: 약 40,000,000원
 - 시설 유지관리비용은 시범사업임을 고려하여 제외하였고,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증가 가능

3) 전국 음식점 현황 및 집단조리시설 현황

(단위: 개)

구분	음식점	집단조리시설
전국	682,282	47,345
300㎡ 이상	약 2만개	3,739

주: 1) 통계청 전국일반음식점 표준데이터(2021.11), 전국집단급식소표준데이터(2021.12) 기준

2) 일반음식점은 시설규모의 누락(약12만건)으로 300㎡이상은 약 2만개소 이상으로 추정됨
 자료: 환경부 대기관리과 제출

4) 1분당 100㎡ 공간의 조리초미세먼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

2.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(안 제13조제2항 신설)

- (사업대상 개소)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통계청 전국일반음식점 표준데이터(2021.11), 전국집단급식소표준데이터(2021.12)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및 집단 조리시설 중 시설규모 300㎡이상 1,000개소를 실태조사하는 것으로 가정
 -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개소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- (실태조사 비용)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는 조리초미세먼지에 대하여 개소당 입·출구 2곳, 1년에 3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
 - 약취: 45,700원 × 2(입·출구) × 3회 = 274,200원
 - 초미세먼지: 175,200원 × 2(입·출구) × 3회 = 1,051,200원
 - 출장비 및 재료비: 약 1,000,000원
 - 합계: 2,325,400원
- 실태조사 비용은 추계 첫해인 2023년에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비용 추계: 2023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(안 제13조제2항 신설)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
분석비용 단가 (A, 회)	2.3	—	—	—	—	2.3
조리시설 (B, 개소)	1,000	—	—	—	—	1,000
실태조사비용 (C=A×B, 백만원)	2,325	—	—	—	—	2,325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3. 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(안 제13조의2 신설)

- (사업대상 개소) 2023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 대상 사업장 1,000개소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정
 - － 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대상 개소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- (시설 설치비)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2024년에 조리초미세먼지 방지 시설과 센서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용(합계 4,000만원)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－ 방지시설 (100m³/min) 설치비 약 3,000만원
 - － 센서모니터링시스템 약 1,000만원
 - － 시설 유지관리비용은 시범사업임을 고려하여 제외하였고,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증가 가능

[표 3] 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비용 추계: 2023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(안 제13조의2 신설)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
설치비 단가 (A, 백만원)	—	40	—	—	—	40
조리시설 (B, 개소)	—	1,000	—	—	—	1,000
시설 설치비 (C=A×B, 백만원)	—	40,000	—	—	—	40,000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4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및 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경우, 2023년에 23억 2,500만원 및 2024년에 400억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423억 2,500만원(연평균 84억 6,500만원)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3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	연평균
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(안 제13조제2항 신설)	2,325	—	—	—	—	2,325	465
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 사업(안 제13조의2 신설)	—	40,000	—	—	—	40,000	8,000
합 계	2,325	40,000	—	—	—	42,325	8,465

주: 대상 사업장 1,00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설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여 작성하였고, 사업 대상 개소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 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국회예산정책처	경제비용추계과
과	장 이현경
추계세제분석관	지수현
연 락 처	02-6788-3735
	zisu37@nabo.go.kr
